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10. 19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
- 다. 상정일자 : 2000.10.30 제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정보화 사업의 관리인력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, 진부도서관, 위생매립장의 시설 관리인력의 정원이 새로이 승인조치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정원을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
 - 총정원 505명 ⇒ 517명(증 12명)
- 나. 한시정원 인정
 - 집행기관의 정원중 2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4. 검 토 결 과

- 본조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

- 행정자치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승인을 통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군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보여짐
- 기타 법령, 형식, 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